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053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요지	2
2.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 출 일 : 2024. 7. 24.
3. 회 부 일 : 2024.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유형 중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평형수 처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략) 2. 이 법을 위반하여 <u>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u><신설></u> 3. (생략) 4. 임원 중에 <u>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u> 있는 법인	제22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2. ----- <u>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u> ----- ----- <u>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2의2. 이 법을 위반하여 <u>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3. (현행과 같음) 4. ----- <u>제1호, 제2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u> -----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 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 ----- ----- -----.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 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 제1호, 제2호, 제2호 의2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 람이 있는 ----- -----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 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0조(등록의 결격사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 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2. 이 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u>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3. (생 략) 4. 임원 중에 <u>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u>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2의2. 이 법 또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3. (현행과 같음) 4. ----- <u>제1호, 제2호, 제2호의2 또는 제3호</u>----- -----
---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2. 삭제 3. <u>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u> <u><신 설></u> 4. (생 략)	제71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3. <u>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u>3의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u> 4. (현행과 같음)

5. 임원 중에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8. (생략)

② (생략)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 3. (생략)

4. 이 법 또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
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5. ----- 제3호, 제3호의
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 -----

제75조(등록의 취소 등) ①-----

-----,

-----.

1. -----

----- 제3호, 제3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조사기관의 결격사유) ----

 ----.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신 설>

5. 대표이사가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영향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 다만, 법인의 대표이
사가 제8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
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
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4. ~ 6. (생략)

② (생략)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
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사람

5. ----- 제3호, 제4호
또는 제4호의2-----

제82조(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

1. 2. (현행과 같음)

3. -----
-----.
----- 제3호, 제4호
또는 제4호의2-----

-----.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1. ~ 3. (생략)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u>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u> <u>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u> <u><신설></u> 5. · 6. (생략) ② · ③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u>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현행 「선박평형수 관리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은 징역(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하에서 “N
년”이라고 함)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각 법률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
해양폐기물관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법률	개정 대상 결격사유
선박평형수 관리법	○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결격사유 - (현행)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	○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 결격사유 - (현행)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법률	개정 대상 결격사유
물 관리법	집행이 면제된 후 <u>1년</u>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양환경 관리법	○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결격사유 - (현행)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u>1년</u>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등록 결격사유 -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u>1년</u>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해양환경공단 임원 결격사유 -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u>2년</u>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그런데 이와 같이 결격사유를 징역(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만 규정하는 경우, 실형 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¹⁾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왔음.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N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는데,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법령해석례에 따르면 집행유예기간 경과 시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¹⁾²⁾ 및 만약

1)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이하 생략)

2) 구 민의원의원선거법(58.1.25. 법률 제470호) 제14조 제2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라 함은 예컨대, 가석방 중의 자로서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요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실효 또는 취소의 사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집행유예기간이 모두 경과한 후 N년이 지나야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보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의 결격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으로 결격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함에도³⁾

법문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가 해소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음.

-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결격사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였고, 이에 더하여 헌법재판소는 보충의견을 통해 입법자는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심판대상조항이 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입법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때에는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하여 최초부터 형의 선고가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와 같이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는 위 법조에서 규정한 피선거권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58. 6. 21. 선고 4291선1 판결)

- 3) 법제처도 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례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는 등, 일관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결격사유를 해석해 왔음.

* 민원인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18-0006, 2018. 3. 14.]

[개정안 관련 헌법재판소 판시사항 요지]

대상조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

*헌재 보충의견 : 입법자는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심판대상조항이 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 정부는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보충의견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보다 명확하기 규정하기 위하여,

결격사유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법률을 대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결격사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고자 2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2024년 7월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개정안은 이 중 해양수산부 소관 3건의 법률에 대하여 ①징역(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N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징역(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법률에 따른 등록 등의 결격사유로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의 개정권고에 따른 개선방안]

현행	개선안
제@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N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제@조(결격사유) ----- ----- -----.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N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는 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실형·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각각의 결격기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점, ② 「국가공무원법」 또는 「관세사법」⁴⁾ 등에서 실형·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구분하여 결격사유를 정하는 입법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보임.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2. (생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 8. (생략)

「관세사법」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다.

1. ~ 3. (생략)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 7. (생략)

문 의 처
02)6788-5422